

# 중도금대출 서류 안내

구분	내 용										
필수 서류	① <b>분양계약서 원본</b> (공동명의인 경우 : 증여계약서 원본) ② <b>신분증</b> (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) ③ <b>주민등록등본 1부</b> (주민번호 전체공개필수,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추가) ④ <b>주민등록초본 1부</b> (상세, 본인 및 세대원 각각,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 초본 발급) ⑤ <b>가족관계증명서</b> (계약자 본인 기준) ⑥ <b>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</b> (계약자 본인 기준, 공동명의시 계약자 및 공동명의자 각각)										
필수 소득증빙서류	<table border="1"> <tr> <td><b>근로소득자</b></td> <td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① 재직증명서 (회사 발급, 날인 필수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(최근년도, 날인 필수)                         </td> </tr> <tr> <td><b>개인사업자</b></td> <td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① 사업자등록증 (사본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소득금액증명원 (최근년도)                         </td> </tr> <tr> <td><b>연금소득자</b></td> <td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①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또는 연금증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연금수급내역서(1년)                         </td> </tr> <tr> <td><b>프리랜서, 보험모집인</b></td> <td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① 경력증명서, 위촉증명서, 고용계약서 (회사 발급, 날인 필수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(최근년도, 날인 필수)                         </td> </tr> <tr> <td><b>기타소득자</b> (주부 및 위 소득자에 미해당)</td> <td> <b>아래 3가지 중 택 1</b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· 신용카드사용내역서 (연말정산용) + 사실증명원(필수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· 건강·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(6개월) + 사실증명원(필수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· 국민연금납부내역서 (6개월) + 사실증명원(필수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※ 소득신고사실 없음을 확인하는 “사실증명원”은 국세청 및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함                         </td> </tr> </table>	<b>근로소득자</b>	① 재직증명서 (회사 발급, 날인 필수)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(최근년도, 날인 필수)	<b>개인사업자</b>	① 사업자등록증 (사본) ② 소득금액증명원 (최근년도)	<b>연금소득자</b>	①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또는 연금증서 ② 연금수급내역서(1년)	<b>프리랜서, 보험모집인</b>	① 경력증명서, 위촉증명서, 고용계약서 (회사 발급, 날인 필수) ②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(최근년도, 날인 필수)	<b>기타소득자</b> (주부 및 위 소득자에 미해당)	<b>아래 3가지 중 택 1</b> · 신용카드사용내역서 (연말정산용) + 사실증명원(필수) · 건강·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(6개월) + 사실증명원(필수) · 국민연금납부내역서 (6개월) + 사실증명원(필수) ※ 소득신고사실 없음을 확인하는 “사실증명원”은 국세청 및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함
<b>근로소득자</b>	① 재직증명서 (회사 발급, 날인 필수)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(최근년도, 날인 필수)										
<b>개인사업자</b>	① 사업자등록증 (사본) ② 소득금액증명원 (최근년도)										
<b>연금소득자</b>	①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또는 연금증서 ② 연금수급내역서(1년)										
<b>프리랜서, 보험모집인</b>	① 경력증명서, 위촉증명서, 고용계약서 (회사 발급, 날인 필수) ②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(최근년도, 날인 필수)										
<b>기타소득자</b> (주부 및 위 소득자에 미해당)	<b>아래 3가지 중 택 1</b> · 신용카드사용내역서 (연말정산용) + 사실증명원(필수) · 건강·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(6개월) + 사실증명원(필수) · 국민연금납부내역서 (6개월) + 사실증명원(필수) ※ 소득신고사실 없음을 확인하는 “사실증명원”은 국세청 및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함										
유의사항	- 대출관련 구비서류(필수 서류 + 필수 소득증빙서류) - 대출관련 구비서류는 대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받은 것에 한하여 유효함 - 필수 소득증빙서류는 계약자 본인의 자료에 한함 - 중도금대출 신청시 계약자(대출신청인)와 공동명의자 동일 날짜에 방문 - 공동명의자의 경우 필수 서류 각각 준비										

## 알아두실사항

- 대출약정은 모바일뱅킹으로 진행 예정으로, 사전에 입출금통장개설(인지세 및 보증료 입금) 및 전자금융 가입이 필요합니다.
- 중도금 대출 약정 등록 일정은 추후 연락 드립니다.
- 구비서류는 서류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발행 분이어야 합니다.
- 공동명의 계약자의 경우 명의자 각각 구비서류를 준비하시고 계약자 전원이 함께 방문하셔야 합니다.
- 대출은 중도금 납부일에 분할 실행되어 분양대금 납부 계좌에 직접 입금됩니다.
- 대출이자 또는 원금을 약정한 날에 납입(상환)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를 부담하여야 하며, 금융거래 제약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 
 ※ 연체이율 : 대출금리에 3.0%를 가산(최고 15.0%) (대출금리가 최고 연체이율 이상일 경우 대출금리+2.0%)
- 납부해야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으로 기한이 도래하기 전 모든 원리금을 변제 해야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신용평점 하락에 따라 금융거래 제약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- 고객님의 신용상태 및 저희 은행의 심사기준에 따라서 대출한도와 대출 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.
- 정부정책 및 개인에 따라 추후 대출자격 및 한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 또한 중도금대출 서류접수만으로 대출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,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발급요건을 충족해야 대출이 최종 확정됩니다.
- 은행의 내규 등에 의한 대출 부적격자는 대출이 제한됩니다.
- 금융소비자는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,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길 바랍니다.
- 금융상품 계약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.
- 이 안내장의 내용은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, 약관의 주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, 실제 상품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,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.
-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부산은행 홈페이지(www.busanbank.co.kr)를 참고하시거나, 부산은행 집담대출센터(051-663-1514, 1515)로 문의 바랍니다.

#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 할인 자격기준 안내

대상	자격요건	제출서류
저소득가구 (40%할인)	배우자포함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자	배우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배우자가 직장피부양자로 등재되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소득증빙자료 제출
다자녀가구 (40%할인)	미성년 자녀가 3인 이상	주민등록등본 + 가족관계증명서
장애인가구 (40%할인)	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	주민등록등본 + 장애인증명서
고령자가구 (40%할인)	보증신청인 및 배우자가 만 65세이상 단, 보증신청인이 단독세대주인 만65세 이상의 고령자인 경우 60%할인	주민등록등본
노인부양가구 (40%할인)	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만65세 이상 직계존속을 1년간 부양한 경우	주민등록등본
신혼부부 (40%할인)	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합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경우	혼인관계증명서+배우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(3개월이내 결혼예정인 경우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) 배우자가 직장피부양자로 등재되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소득증빙자료 제출
한부모가족 (60%할인)	보증신청인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인 경우	한부모가족증명서
다문화가구 (40%할인)	보증신청인의 배우자가 외국인 또는 귀화로 국적을 취득한 경우이거나 보증 신청인이 귀화로 국적 취득하였으며 기혼인 경우	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(출입국관리사무소),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
국가유공자 (40%할인)	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세대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(유족포함) - 국가유공자 -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- 특수임무유공자 - 고엽제피해자 - 518민주유공자	각 대상자별 증서(유족증 사본) 또는 각 대상자 확인원(유족증확인원)
의사상자 (40%할인)	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, 세대원 중 해당하는 경우(유족포함)	의사자(유족)증 사본 또는 의사상자(유족) 증서
모범납세자 (10%할인)	모범납세자	모범납세자증명서(발급1개월 이내) - 국세청장이상(장관, 국무총리, 대통령)의 훈장, 표창, 산업포상